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18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가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84,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39,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B로부터 [redacted]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 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계약금액 43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19. ~ 2015. 3. 20.]을 체결하였으며(이하 '본계약과 변경계약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하(2014. 9. 17. ~ 2015. 5. 30.)인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27.경 위 건물의 존치기간을 2016. 1. 9.까지로 연장하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6,999,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한 2015. 5. 2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지출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2. 원고에게 취득세 10,341,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4,340원 합계 11,295,640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redacted]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8구합51322호),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물의 '개수'로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9. 24. '이 사건 공사내역 중 일부는 건축물의 "개수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공사항목들은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공사항목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20. 6. 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710호].

바. 이에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별지1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의 '과표제외'란 기재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개수나 이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공사비 합계 392,879,091원(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10,184,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39,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1, 6호의 '개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건축물의 개수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개수의 경우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인데, 이 사건 공사는 견본주택의 실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조성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는 "개수"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즉,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②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나.목),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다.목)이라고 정하고 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세대철거, 공용홀 벽체 철거, 바닥 구조틀 철거, 천정 철거, 소방설비 개보수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급·배수배관(열선포함), 오·우수배관 등], 전기 및 조명공사[배관/배선, 냉난방기배선 등]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개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 규모,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각 목에서 정한 "개수" 또는 "개수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인 2015. 5. 27.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대로 2015. 5. 27.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비용을 상회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고 견본주택의 경우 건물자체보다는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E 아파트'의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을 견본주택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주택이 달라질 경우 다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사는 건축물로서의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개수나 이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10

별지1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E 아파트 견본주택 건립공사)

품목			공사금액			금액
건설공사비	공통공사					
		가설공사	49,579,600			49,579,600
		목공사	21,524,670			21,524,670
		금속공사	1,382,000			1,382,000
		도장공사	864,000			864,000
		타일 및 석공사	9,374,000			9,374,000
		수장공사	9,835,000	룸카펫	1,000,000	8,835,000
		창호공사	110,000			110,000
		유리공사	300,000			300,000
		설비공사	29,015,000			29,015,000
		전기 및 조경공사	15,312,750	스피커	1,000,000	14,312,750
		조경공사	10,250,000	외부조경	500,000	9,750,000
		기타 잡 가구공사	1,750,000	실내화	1,750,000	-
		싸인공사	40,000,000			40,000,000
		공통공사비 계	189,297,020	-	4,250,000	185,047,020
	세대공사					-
	가. 84A>93A TYPE	목공사	21,913,390			21,913,390
		창호공사	550,000			550,000
		노삼공사	1,409,400			1,409,400
		타일 및 석공사	3,466,000			3,466,000
		수장공사	3,077,600	아트월	400,000	2,677,600
		유리공사	600,000			600,000
		가구공사	35,000,000			35,000,000
		설비공사	500,000			500,000
		전기 및 조명공사	540,000	전시조명	540,000	-
		소 계	67,056,390	-	940,000	66,116,390
	나. 101B>111B TYPE	목공사	26,444,980			26,444,980
		창호공사	1,352,400			1,352,400
		도장공사	1,736,100			1,736,100
		타일 및 석공사	5,884,000			5,884,000
		수장공사	3,754,600	아트월	300,000	3,454,600
		유리공사	600,000			600,000
		가구공사	35,000,000			35,000,000
		설비공사	500,000			500,000
		전기 및 조명공사	540,000	전시조명	540,000	-
		소 계	75,812,080	-	840,000	74,972,080
		세대공사비 계	142,868,470		1,780,000	141,088,470
	직접공사비(공통공사+세대공사) 계		332,165,490		6,030,000	326,135,490
간접공사비						-
	공과잡비외		66,743,601			66,743,601
	간접공사비 계		66,743,601			66,743,601
전체공사비(직접공사+간접공사) 합계			398,909,091	-	6,03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본d판결문은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d출력되었습니다r
영리목적으로d이용하거나d무단d배포를d금합니다r게시일자d:d2020q09q00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